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190 취득세부과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3.
판 결 선 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6. 23. 취득세 3,179,840원 및 지방교육세 272,550원의 각 부과처분,

나. 2016. 8. 11.[1] 취득세에 관한 무신고가산세 635,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7,560원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2,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납세고지서(갑 제5호증의 1)상의 부과일자(2016. 8. 11.)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상 '2016. 8. 12.'은 '2016. 8. 11.'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자녀인 B(C생), D(E생)은 원고의 배우자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상속인인데, 망인이 2004. 7.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인천 남구 G, H에 있는 I아파트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 7. 27. 접수 제77820호로 2004. 7. 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7지분, B, D 앞으로 각 2/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와 B, D은 2015. 9. 17.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9. 21. 접수 제110877호로 2015. 9. 17.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소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5. 9. 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6. 23. 피고에게 2014. 1. 1.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상속재산 재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당초 상속분(3/7지분)을 초과하여 나머지 4/7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061,910원(본세 3,179,840원, 가산세 882,070원) 및 지방교육세 293,640원(본세 272,550원, 가산세 21,0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본세의 부과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 3,179,840원과 함께 그에 관한 무신고가산세 635,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7,560원 및 지방교육세 본세 272,550원과 함께 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2,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원래 원고이고 그 등기명의만을 망인으로 하였던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D이 미성년자인 까닭에 절차의 편의상 원고가 임의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경료된 것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원고와 자녀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때 비로소 상속분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2) 등기선례 제4-915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되고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은 삭제되기까지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로 볼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마쳐진 후에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단지 "2004. 7.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동상속인 원고, B, D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고, 당시 망인의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정하여져 있었다거나 원고, B, D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와 망인은 혼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의 혼인 중 망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와 망인, 그 자녀들인 B, D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에 있어 협력하거나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만 이루어진 점, ③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종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 중 1인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④ 원고와 B, D은 부자지간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B은 만 21세로 갓 성년이 지난 상태였고, D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는데, 원고와 B, D의 관계, B, D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와 B, D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D이 그 친권자인 원고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종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이던 D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전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없는 이상, 다른 공동상속인인 B,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 명의의 등기 신청 없이 원고가 혼자 명의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종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B, D 앞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B, D 사이에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B,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B,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판사 박용근

판사 황여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06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끝.